

part 14 스포츠찬바라(스포찬)



1. 스포찬(spochan) 소개

스포찬이란 이아이도 지도자이던 타나베테준도(田邊哲人) 회장이 진검승부의 스포츠화를 연구하여 1971년 국제 호신도 연맹을 조직한 것이 스포찬(스포츠찬바라)의 시초가 되었으며 ‘공평, 안전, 자유’ 의 근본이래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의 한분야로 국제호신도연맹(국제스포츠찬바라협회)에서 개발한 에어소프트 검과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공격과 방어의 호신기법으로 겨루는 뉴 스포츠의 한 장르입니다

이렇듯 정통검도 및 이아이도의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정통수련(이아이도)은 수련대로 고수하면서 현대에 맞게 재구성된 호신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기술들을 실전처럼 적용해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재 탄생시켜 또 하나의 수련 장르로 수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45cm단도에서 2m의 창까지 여러 형태의 수련이 있으며 개인전 단체전 등등 여러 형태의 시합이 이루어지고 현재 전 세계 공식이사국 등록수는 40여 개국에 약 40만 명의 회원수를 거느리고 약 5000명 이상의 공인사범 및 지도원(인스트렉터)이 활동하고 있으며 비이사국을 포함 한다면 전 세계 70여개국 이상에서 수련되어 지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찬바라 협회에서는 매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요코하마 문화 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34년을 맞이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술축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일본에서는 올림픽 종목에 합류 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적인 뉴스포츠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스포츠찬의 장점은 어느 무술이나 단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뉴 스포츠로서 다양한 수련방식에 접목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기초와 기본예절만 지킨다면 즐겁게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하나는 기존 정통검도(켄도, 이아이도)수련에는 장비의 가격대가 높아 쉽사리 접하기가 힘들게 사실이었으나 그런 것들의 대체 수련방식으로 부담감이 줄었다는 점에 있다

이렇듯 간편한 수련방식과 그 기술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필요성이 입증되어 일반인은 물론 전문기관의 필수무술로 지정되어 수련되어지고 있다.

2. 스포찬(spochan) 수련종목 및 장비소개

기술의 구분은 각 무기별 기본동작(基本動作)과 겨루기로 구분된다.

1) 기본동작

(1) 短刀 の部 (단도의부) 全長45cm以下



(2) 小太刀 の部 (코다치의부) 全長60cm以下



(3) 兩手長劍 の部(양손장검의부) 全長100cm以下



(4) 片手長劍 の部 (한손장검의부)

(5) 二刀流 の部 (이도류의부)



(6) 楯と小太刀 の部 (방패.코다치의부)



(7) 杖 の部 (장의부) 全長140cm以下



(8) 棒 の部 (봉의부) 全長210cm以下



(9) 槍・ナギナタ の部 (야리,나기나타) 全長200cm以下



2) 겨루기의 구분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

- (1) 동일 종목의 겨루기 기본
- (2) 타 종목별 겨루기 (자유종목)

3) 보조 장비 소개

국제 경기의 경우 국제장비(에어캡)를 사용 하지만 국내는 수련용(보급용) 장비 사용



3. 스포츠찬바라 시합규정 및 심판법 소개

스포츠찬바라의 경기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1) 기본동작 경기

- 스포츠찬바라의 기초가 되는 소태도 기본동작의 기술을 구령에 맞춰 연무하여 그 기술의 표현 능력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토너먼트 방식

2) 겨루기 경기(개인)

- 스포츠찬바라의 수련종목별 무기의 겨루기
- 스포츠찬바라의 대표 종목은 60cm의 소태도 종목이다

3) 단체전

- 단체전에는 3인, 5인, 각 소속별 단체 대항전을 실시 할 수 있다
- 단체전도 기본동작과 겨루기의 경기를 실시

4) 시합규정 및 세부사항

(1) 경기장

- ① 경기장은 경계선을 포함하여 6~7m의 정사각형에서 실시한다.

② 경기장의 중심은 ×표를 표시하고, 중심에서 좌우 1,5m거리에서 주심석을 기준으로 좌(백) 우(홍)색선을 한줄씩 표시해 코트를 구분한다
경기장 및 표시선의 길이는 시합장의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 경기 시간

국제룰의 경기시간은 3분을 기준으로 하고, 1점 승부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단) 결승전은 3점 2선승제로 실시. -국제대회의 경우 국제 규정법을 적용한다
국내대회의 경우에는 3분간 3점 2선승제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시간 및 규정은 대회 성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3) 선수의 구분

선수의 구분은 홍(적색)과 백(흰색)의 코트로 구분하고 헤드기어 뒤에 적색과 백색의 띠를 부착하여 선수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4) 승패의 구분

경기중 승패의 구분은 누구라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여 성공하면 승리한다.
단) 유효공격은 기검체의 일치와 공격부위의 구멍이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경기 중 유효공격 부위는 다음과 같다

-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공격을 인정한다
 - 공격부위 : 머리, 몸통, 다리, 손목, 찌름 등이 있다
 - . 머리(정면, 좌, 우)
 - . 몸통(목에서 허리 까지 어깨에서 상박부까지로 정한다)
 - . 손목(좌, 우 팔목)
 - . 찌름(얼굴, 몸통)

(5) 검의 유효 타격위치

각 시합 종목별 사용검의 기준으로 칼끝의 30cm 이내 부분을 유효타격 위치라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정미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무효를 선언한다.

(6) 경기의 개시, 중지, 종료

① 경기의 개시와 종료는 주심의 선고로 행한다.

② 경기 중 중지 합의 재개

경기의 중지및 합의는 각 심판의 판단과 수기를 올려 표시하고 그를 주심이 응한다. 재개는 주심의 선고로 행한다.

③ 경기의 중지 요청

시합자는 사고 등으로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경기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7) 금지행위

① 시합자는 금지된 약물 및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

② 시합자는 심판원 또는 상대에 대하여 무례한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

③ 부정용품을 사용하는 행위

④ 대회 운영상 부당한 중지요청을 하는 것

(8) 시합중 경고 및 중지

① 상대의 발을 걸거나 넘어 트리는 행위

② 상대를 부당하게 장외로 밀어내는 행위

③ 경기 중에 장외로 나가는 행위 (양발)

④ 정지 및 중지명령에도 공격행위

⑤ 심판의 구령 및 명령에 불복 행위

⑥ 상대에 대한 욕설 및 미관상 불합리한 상황

⑦ 기타 관례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

(9) 반칙패의 경우

① 규정된 경고행위 2회 이상과 주심의 판단하에 부적절 행위 등의 발생시 주심의 권한으로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10) 시합자의 권한과 의무

① 시합자는 대회 운영규정과 규칙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자세로 시합에 임해야 한다.

② 시합자는 심판의 판단과 명령에 절대 따를 의무를 가지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처분 및 책임을 진다.

③ 시합 중 심판의 판단 착오 및 부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회검사역에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5) 심판원 구성 및 세부사항

(1) 심판원의 구성

심판원의 구성은 겨루기 심판과 기본동작의 심판으로 구분한다(겨루기 심판의 경우).

심판원의 구성은 4명으로 구성한다(주심1명, 부심 2명 대회검사역).

결승의 경우 정확한 판단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심을 4명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① 주심

주심은 각 해당 경기장에 있어서의 운영에 필요한 심판상의 최고 권한을 갖는다.

주심은 해당 경기운영의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심판수기를 이용 승부 결정시 또는 반칙 등의 표시와 선고를 행한다.

② 부심

부심 2명을 원칙으로 하고 판정에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부심은 기로써 승부 결정시 또는 반칙 등의 표시를 수기로써 표현하고 운영상의 주심을 보좌한다. 그리고 긴급할 때는 경기중지의 표시와 선고를 할 수 있다.

③ 대회 검사역

대회 검사역은 심판장의 권한을 수행하며 심판의 조연자로서 선수의 이의 제기시 및 공정한 시합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④ 계 원

경기운영상 계시계, 표시계, 기록계, 선수계를 둘수 있다.

그 구성과 임무는 대회장의 운영에 따라 정한다.

(기본동작의 경우)

심판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① 구령에 의해 실시되는 기본동작의 연무(기검체)를 심판원의 판단을 수기로 표현한다.

(2) 심판원의 자격

심판원의 자격은 국제호신도연맹(대한 호신도 협회)의 공인심판(1, 2, 3급)으로 구성한다.

(3) 심판원의 권한과 의무

① 심판원은 본인의 주관과 권한에 대해 타인의 의견이 아닌 본인의 판단에 자신감을 갖

고 절대 공정성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② 부정 판단 및 심판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관련된 책임을 진다.

(4) 심판구령법 및 수기법 구분표

상황	선고 구령		수기법
	국내구령	국제구령	
시작	시작(각 회 전 명칭)	하지메	양기를 양쪽에 붙인다
정지의 발생	중지	마테	양기를 위로 올린다
정지 후 재계	계속	쵸-코	양기를 양쪽에 붙인다
공격성공 발생	각 부위의 명칭을 외친다(머리 손목 몸통 다리 찌름) 승부 끝	요시 (맨, 코데, 도, 아시, 찌키) 아리 쇼부아리아메	성공쪽 기를 올린다 선고후 기를 내린다
공격시 미약할때	무효	나시	양기를 밑으로 교차 흔든다
손으로 방어시	중지-손카바 뒤로-계속	카바이트테	시합을 중지후 손카바 선고를 하고 계속 진행한다
승패의 판정	(홍, 백) 승	(아카, 시로)노카츠	승자의 기를 올린다
상타	중지후-상타	마테 - 아이우치	(주)양기를 올린후 중지선고후 양기를 내려 좌우로 올린다 (부) 양기를 양옆으로 올린다
상타 후 개시	계속	쵸-코	양기를 양옆으로 내린다
상타 2회시	중지 후 종료	마테-마케	(주)양기를 올린후 중지선고후 양기를 내려 좌우로 올린다 (부) 양기를 양옆으로 올린다
무효	무효	무코	양기를 좌우 아래로 흔든다
기권		키켄	양기를 좌우 아래로 포갠다
합의	합의	고우기	양기를 오른손에 잡고 오른쪽으로 올린다
합의 후 판정	(홍, 백) 승	(아카, 시로)노카츠	승자의 기를 올린다
심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판정	사이 한테이	각심판 양기표시 후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한다
	(무효시) 계속	쵸-코	양기를 양옆에 붙인다

경고 발생시	중지	마테	양기를 올린다 중지후 반대쪽으로 잡고 경고선수를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선고를 한다
경고 2회시 반칙패	중지 (홍,백) 승	마테 (아카,시로)노카츠	양기를 올린다 중지후 반대쪽으로 잡고 경고 선수를 향해 손가락으로 2회를 표현하고 수기를 들어 패를 선언한다
위험 상황시(주,부)	중지	마테	양기를 올린다 신속히 상황을 처리한다
갈려(주)	중지후 갈려	마테-와까레	양기를 위로 올려 중지후 양기를 앞으로 내린후 좌우 벌린다
상황처리 후	계속	쵸-코	양기를 붙인다
시합중 무효시	무효	무코	양기를 교차해 흔들어 준다
심판의 판정 기권	기권	키켄	양기를 교차시킨다
주심:오른손(홍기,아카) 왼손(백기,시로) 부심: 오른손(백기) 왼손(홍기)를 든다			